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배기량 3천시시(cc)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백 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개선부담금의 기본 부과금액에서 배기량 3천시시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을 변경함(안 별표 6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의2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08년 1월 1일부터 15,190원”을 “2024년 7월 1일부터 7,6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6의2]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(제14조제2항 관련) 비고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배기량 3천cc 이하의 일 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 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 자동차에 대한 기준 부과금액은 <u>2008년 1월 1일부터 15,190원</u>으 로 한다. 다만,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한다.	[별표 6의2] 개선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(제14조제2항 관련) 비고: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4년 7월 1일부터 7,600원</u>--- -----.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6688